

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3147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76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7. 체결된 증여계약은 49,91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16. 4. 7. 이전에 이미 원고와 D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던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D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D과의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위 변경 당시 D의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에 관한 상당한 심사를 거쳐 보증기간을 연장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N기금'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앞서 보증신청인으로부터 대출금 용도에 관한 확인서류로 농지원부 등을 제출받는다. D은 당초 원고에게 과수 재배 등을 위한 영농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최초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기간 연장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 소유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의 보증기간 연장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무렵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보증기간 연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는 이 사건 제2 대출에 대하여 2016. 1. 6. 단 하루, 이 사건 제3 대출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이자지급을 연체하였을 뿐이다. 연체기간 등에 비추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 D은 2017년에도 이자지급을 연체한바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8년에 이르러 상당 기간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12.경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재차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3. 29.에 이르러서야 E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비로소 D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④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단순히 D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김민지

별지

목 록

1. 경북 영덕군 F 잡종지 800㎡
2. 경북 영덕군 L 답 1897㎡
3. 경북 영덕군 M 잡종지 500㎡. 끝.

